

의안번호	
의 퇴 인	장종태 의원
회 답 일	2024. 8. 8.
추 계 번 호	24C2515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노인일자리에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9,574억원(연평균 1,915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4~2028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4	2025	2026	2027	2028	합계	연평균
노인일자리 최저임금 적용 (안 법률 제19814호 제23호)	79	861	1,787	2,834	4,012	9,574	1,91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법률 제19814호 제23호	노인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함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법률 제19814호 제23호	○	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및 최저임금 수준 등에 관한 최근 추세를 활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개정규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노인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현재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는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최저임금법」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으나,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경우 사회참여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
 - 2024년 시간당 29만원씩 월 30시간, 11개월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, 이외에 부대경비로 연간 18만원을 추가 지급
 - 본 추계서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-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 시행 시 총 재정소요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의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
 - (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자 수) 보건복지부 예산서상 2019~2023년의 참여자 수 추이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
 - (현행 제도에 따른 시간당 활동비 지급 단가) 2019~2023년 해당 단가가 27만원으로 유지된 후 2024년 29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, 추계기간의 시간당 활동비 지급 단가는 29만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 - (개정안에 따른 시간당 활동비 지급 단가)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「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43호) 및 「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

고시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45호)에 명시된 단가를 준용하되, 이후 기간은 2021~2025년의 증가율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

- 연간 부대경비 지원액(연간 18만원), 월 평균 참여시간(30시간)과 참여 개월 수(11개월)는 모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 - 다만, 개정안 부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개정규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2024년은 2개월을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부대경비 지원액은 2개월분으로 환산하여 적용

[표 2]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및 활동비 등 추이

(단위: 천명, 천원, 개월, %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가율
참여자 수	543	590	608	608	654	4.8
활동비	270	270	270	270	290	-
참여 개월 수	11	11	11	11	11	-
부대경비	180	180	180	180	180	-
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[표 3] 최저시급 추이

(단위: 원, %)

구 분	2021	2022	2023	2024	2025	연평균 증가율
최저시급	8,720	9,160	9,620	9,860	10,030	3.6

주: 2025년은 최저임금안 기준

자료: 각 연도 최저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,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에 소요되는 총재정소요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0조 8,079억원으로 추계됨

[표 4] 현행 제도 유지 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에 대한 총재정소요 추계: 2024~2028년

(단위: 명, 천원, 개월)

구 분	2024	2025	2026	2027	2028	합계	연평균
참여자 수	685,129	717,739	751,902	787,691	825,183	-	-
월 활동비 단가	290	290	290	290	290	-	-
참여 개월 수	2	11	11	11	11	-	-
부대경비	33	180	180	180	180	-	-
추가재정소요 (억원)	4,198	24,188	25,339	26,545	27,809	108,079	21,61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,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에 소요되는 총재정소요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1조 7,652억원으로 추계됨

[표 5] 개정안 시행 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에 대한 총재정소요 추계: 2024~2028년

(단위: 명, 원, 개월)

구 분	2024	2025	2026	2027	2028	합계	연평균
참여자 수	685,129	717,739	751,902	787,691	825,183	-	-
월 활동비 시급 단가	9,860	10,030	10,387	10,757	11,140	-	-
월 근로시간	30	30	30	30	30	-	-
참여 개월 수	2	11	11	11	11	-	-
부대경비	32,727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-	-
추가재정소요 (억원)	4,277	25,048	27,126	29,379	31,821	117,652	23,53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결과,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에 최저시급을 적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9,574억원(연평균 1,915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6]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에 최저시급 적용 시 추가재정소요: 2024~2028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4	2025	2026	2027	2028	합계	연평균
현행 제도에 따른 총재정소요(A)	4,198	24,188	25,339	26,545	27,809	108,079	21,616
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(B)	4,277	25,048	27,126	29,379	31,821	117,652	23,530
추가재정소요 (B - A)	79	861	1,787	2,834	4,012	9,574	1,91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